자주 묻는 질문

출입국재류관리청 및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

Q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'자격 외 활동 허가'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
보통은 주 28시간까지 일하지만, **여름 방학 기간에는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?**

A



여름방학, 겨울방학, 봄방학 등 **교육기관에서 정한 장기 휴업 기간 중**이라면, **하루 8시간 이내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**

다만, 노동기준법에 정해진 **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는 없습니다.**

「유학」의 체류 자격에 관한 자격 외 활동 허가의 자세한 내용은
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moj.go.jp/isa/applications/procedures/nyuukokukanri07_00003.html

주의 !

졸업 시점에 '유학' 신분이 사라지기 때문에, **졸업 후 휴가에 대해서는,**
'자격 외 활동 허가'로 **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반한 경우는, **재류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을** 가능성이 있습니다.
규칙을 지키며 일합시다!

참고 : 노동조건 • 휴게 • 휴일의 원칙에 대하여

사용자는 원칙적으로, **주 40시간, 하루 8시간 이내**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. 또한, 근로시간이 **하루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45분,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60분**의 **휴식**을, 각각 근로시간 중간에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 **매주 1일 또는 4주 동안 4일 이상의 휴일**을 부여해야 합니다.

근로시간·휴게·휴일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, 후생노동성의 다국어 **'노동조건 핸드북'**을 확인해 주세요.

https://www.mhlw.go.jp/stf/seisakunitsuite/bunya/koyou_roudou/roudoukijun/foreign/index.html